

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

1 거리두기 체계 운영 현황

①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조치

○ (단계) 수도권 4단계, 비수도권 3단계 적용 중

* 최근 국내 확진자 수는 수도권 1,043명, 비수도권 296명 (10월3주)

<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조치 현황>

| 구분 | 1단계 | 2단계 | 3단계 | 4단계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기준 | ▶ 수도권 250명 미만 ▶ 전국 500명 미만 | ▶ 수도권 250명 이상 ▶ 전국 500명 이상 | ▶ 수도권 500명 이상 ▶ 전국 1,000명 이상 | ▶ 수도권 1,000명 이상 ▶ 전국 2,000명 이상 |
| 주요 조치 | ■ 운영시간 등 제한 없음 | ■ 유흥시설, 노래연습장 등 일부시설 24시까지 운영 ■ 사적모임 8인까지 | ■ 유흥시설, 노래연습장, 목욕장업 등 22시 이후 운영제한 ■ 사적모임 10인까지(4+6) | ■ 클럽 등 집합금지 ■ 식당·카페, 학원 등 22시 이후 운영제한 ■ 사적모임 8인까지(4+4) |

○ (다중이용시설)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별 위험도 및 행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제한 적용 중

- (3단계) 식당·카페 24시, 유흥시설, 노래연습장 등은 22시 운영제한
- (4단계) 유흥시설은 집합금지, 식당·카페, 노래연습장, 학원, PC방 등 10종 시설에 대해 22시 운영제한 적용 중

| 구 분 | 식당·카페, 노래연습장, 목욕장업 등 1·2그룹 | PC방, 오락실, 학원 등 3그룹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수도권(4단계) | 22시 제한 | 22시 제한 |
| 비수도권(3단계) | 22시 제한, 식당·카페 24시 제한 | 제한 없음 |

○ (모임·행사)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으며,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센티브 적용 중

- (접종 인센티브) 3단계는 접종완료자 포함 10인까지, 4단계는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모임 가능(미접종자 최대 4명)
- (행사) 4단계는 행사 금지(비대면행사 예외), 3단계는 50인 미만으로 허용 중

②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시 고려사항

- ① (예방접종)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및 위증증·사망 예방 효과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의 방역체계 전환 가능

- (감염예방) 접종완료자의 감염예방효과는 87.8%로 높은 수준

<연령별 코로나19 확진자 수 및 감염예방효과> (4.3일-10.2일)

| 구분 | 미접종자 | | 완전접종자 | | 감염예방효과 (95% CI) |
|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| | 확진자 | | 확진자 | |
| 전체 | 5,509,795 | 112,450 | 21,781,412 | 13,500 | 87.8% (87.6-88.0) |

* 접종완료자(접종완료 후 2주 경과자)가 발생한 시점(4.3일)부터 분석

- (중증 사망 예방) 완전접종군은 미접종군 대비 중증 예방효과 74.6%, 사망 예방효과 53.8%, 중증화율은 완전접종군에서 현저한 감소

- ② (지속가능성) 코로나19 유행 및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서민경제의 애로 및 일상의 희생이 가중되며 지속가능성 저하

- 사회, 교육, 문화, 경제 등 사회 전반의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으로, 중앙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체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시점 도래
-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체계 필요, 보다 일상과 조화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적 대응체계 검토

- ③ (재확산 우려) 집단면역을 통한 코로나19 종식이 어려운 가운데, 일상 회복과정에서 미접종자·고령층 중심의 재확산 방지 필요

- 초기에 높은 접종완료율 달성했던 싱가포르(78%), 이스라엘(65%) 등은 미접종자·돌파감염 등 재확산으로 방역조치 강화*

* 싱가포르는 사적모임 인원 5명→2명으로 강화, 이스라엘은 그린패스 재가동

- 피로감과 일상회복 기대가 큰 상황으로, 방역 완화로 인한 지나친 긴장감 완화 및 유행 확산 주의할 필요

2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

◆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방역조치 완화·해제

- 생업시설 → 대규모 행사 → 사적모임 순, 마스크 등 기본수칙 유지
- 접종완료자로 구성된 시설·모임은 최대한 방역수칙 완화

① (방향)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 → 중증·사망 발생 억제를 위하여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·취약계층 전파 차단 주력

-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추진하며,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한 방안 도입 검토

② (단계적 완화) 접종 완료율 및 병상가동률, 중환자수·사망자수, 확진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차례에 거쳐 단계적 추진

③ (접종자 중심) 접종 완료자 등^{*}만 이용하는 경우 최대한 방역수칙 완화

* 접종 완료자,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, 18세 이하, 완치자,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

- 전파위험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·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 (요양병원 등) 중심으로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도입

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안전한 시설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완료자 및 PCR 검사 음성확인자 등 중심으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일명 '백신패스' 개념

- 시설 자율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공간·회차도 동일 적용하되, 미접종자 혼합 시 취식금지, 인원 제한 등 현행 방역수칙 적용

*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실내 취식, 합성·합창 등은 2차 개편부터 해제

④ (실천방역) 국민과 단체·협회 등의 참여와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,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에서 일상 속 실천방역 강화

- 지역 상황에 기반한 지자체의 방역관리 노력 및 자율성도 적극 지원

- 다양한 일상 속에서 일상을 회복하며 실천방역 노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관의 소통 및 협력 거버넌스 지속 강화

⑤ (비상계획) 중증환자, 사망자 급증 등 의료체계 여력이 위협받을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, 유행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획 실시

* 평가기준 : 중환자 수, 병상 여력, 감염재생산지수, 확진자 수 등

3 분야별 개편 방향

1) 단계적 완화

①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 완화

- (방향)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, 생업시설(다중이용시설) → 대규모 행사 → 사적모임 등 순으로 완화
- (전환시점) 11월 1일부터 4주+2주 간격*으로 전환 추진
 - * 체계전환 운영 기간(4주) 및 평가 기간(2주),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
- (전환기준) 예방접종완료율,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·사망자 발생,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, 다음 차례 개편 이행 결정
 - * 질병관리청에서 주기적으로 위험도 평가 및 공표
- (절차)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
 - 개편시 방역상황을 판단하며 방역수칙 완화 범위 등 조정

<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>

| 구분 | 1차 개편 | 2차 개편 | 3차 개편 |
|-------|--|-----------|------------|
| 방향 |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| 대규모 행사 허용 | 사적모임 제한 해제 |
| 전환 기준 | ① 예방접종완료율 (1차 70%, 2차 80%) ② 중환자실·입원병상 여력 (>40%) ③ 주간 중증환자·사망자 발생 규모 ④ 유행 규모, 재생산지수 등 ※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 | | |

②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, 전국적 통합 추진

- (기존 거리두기 해제) 지역별, 단계별 수칙체계는 해제하고,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(1차 개편)
 - 일상회복 전환과정에서는 기존 2단계 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, 개편 때마다 해제하여 궁극적으로는 기본방역수칙만 유지
- (지자체 자체결정) 지자체에서 지역별 유행상황,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,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가능
 - 완화된 방역조치의 경우 중대본은 지자체 재량범위 제시, 지자체는 권역별 협의 및 중수본 사전협의, 중대본 사전보고 등 거쳐 조정 가능

2) 다중이용시설

- ◆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도입하면서 방역 제한조치 해제
- ◆ 그 외 시설은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강화하면서 방역 제한조치 해제
- ◆ 1차 개편에서 대부분 제한조치 해제, 실내취식 등은 2차 개편에서 해제

<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>

| 위험도 | 시설 종류 | 주요방향 | 1차 개편 | 2차 개편 | 3차 개편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|-------|
| 위험도 높은 시설 | 유흥시설 등 | 접종증명· 음성확인제 도입 | 24시까지 | 시간제한 없음 | |
| |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, 목욕장업 등 | | 시간제한 없음 운동속도, 샤워실,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(1차) → 시설내 취식 가능(2차) | | |
| | 식당·카페 | 미접종자 규모(4명) 제한 | 시간제한 없음 | | |
| 위험도 낮은 시설 | 영화관, 스터디카페, PC방 등 모든 시설 | 방역 완화 | 시간제한 없음 | 시설내 취식 가능 | |
| | | 접종자 인센티브 | 인원제한, 한칸 띄우기 등 해제 (영화관·실외스포츠관람) 취식 허용 시범운영 | | |

①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

- (현황) 시설 내 행위특성과 관리가능성을 고려하여 3그룹으로 분류하고, 거리두기 단계 및 그룹별로 감염확산 억제를 위한 운영시간 제한 시행 중

<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분류에 따른 방역 조치 >

| 구분 | 다중이용시설 | 수도권 (4단계) | 비수도권 (3단계) |
|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1그룹 (3종) | △ 유흥시설 △ 콜라텍·무도장 △ 홀덤펍·홀덤게임장 | 집합 금지 | 22시 운영제한 |
| 2그룹 (5종) | △ 식당·카페 △ 노래연습장 △ 목욕장업 △ 실내체육시설 △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| 22시 운영제한 | 22시 운영제한 24시 식당·카페 |
| 3그룹 (11종) | △ 학원 등 △ 영화관·공연장 △ 독서실·스터디카페 △ 유원시설 △ 오락실·멀티방 △ 상점·마트·백화점 (300㎡ 이상) △ 카지노(내국인) △ PC방 | 22시 운영제한 24시 영화공연, 독서실·스터디카페 | 제한 없음 |

- (방향)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,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 해제
 - (1차) 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, 유흥시설은 24시*까지 운영시간 제한 완화
 - * 다만, 현행 1단계 지역(경북 12개 시·군)은 현행과 같이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
 -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이후(11.22.~) 운영시간 제한 해제 (사회문화분과)
 - 유흥시설, 노래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 등 1·2그룹은 위험도를 고려,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한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
 - * 접종증명 · 음성확인제 미도입시에는 2차 개편에서 시간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
 - 식당·카페는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하지 않고 미접종자의 이용규모 제한
 - 그 외 모든 시설은 별도 조치 없이 시간 제한 해제
- (2차)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

< 운영시간 제한 해제 >

| 다중이용시설 분류 | 기 존 제 한 | | 개편(안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|
| | 수도권 | 비수도권 | |
| 학원, 영화관, 공연장, 독서실, PC방 등 (3그룹) | · 22시/24시 제한 | · 제한없음 | · 시간제한 해제 · 별도 조치 없음 |
| 식당/카페 (2그룹) | · 22시 | · 24시 | · 시간제한 해제 ·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|
|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업 등 (2그룹) | · 22시 | · 22시 | ·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도입 · 시간제한 해제 |
| 유흥시설, 콜라텍/무도장 등 (1그룹) | · 집합금지 | · 22시 | ·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도입 및 24시까지 완화(1차) → 시간제한 해제(2차) |

* 학원은 수능 이후(11.22.~) 운영시간 제한 해제

②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 · 음성확인제 도입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

- (고위험시설)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만 이용가능한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도입·적용 (1차 개편)

- (대상) 유흥시설,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업, 경마·경륜·경정, 카지노 (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 해당)
- 다만,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및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2주 부여(그 외 시설은 계도기간 1주)
- (해제) 1차 개편 후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시설의 감염사례 등 안전성 평가, 2차 개편 후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대상에서 해제

◆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도입시설 검토 결과

- (검토기준) 시설 및 활동 특성별 위험도 고려
 - (시설) ①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(식사, 음주, 목욕 등), ②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, ③거리두기(2m) 유지가 어려운 실내 등
 - (활동) ①비말 생성이 많은 활동(운동, 노래, 학교 등), ②장시간 실내 체류
- (검토결과) 시설별·활동별 위험도 기준 다수를 충족하며, 감염 확산 및 관리 가능성 측면에서 위험도를 낮출 필요성이 높은 시설 적용 검토
 - 1그룹(유흥시설), 2·3그룹 일부(노래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, 카지노) 및 기타 시설(경륜·경정·경마장) 등

<4차 유행 중 다중이용시설 확진자 발생 현황 ('21.7월~10월)>

<단위 : 명 / 개소>

| 구분 | 합계 | ①유흥시설 | ②실내체육시설 | ③학원·교습소 | ④일반음식점 | ⑤지역시장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확진자 수 (점유비율, 시설 개소수) | 15,085 | 2,599 (17.2%) | 2,414 (16.0%) | 2,390 (15.8%) | 1,998 (13.6%) | 2,019 (13.4%) |
| | | 4만개 | 5만 4천개 | 12만개 | 67만개 | 2천개 |
| | | ⑥목욕장업 | ⑦노래연습장 | ⑧백화점·마트 | ⑨실외체육시설 | 기타시설 |
| | | 1,286 (8.5%) | 770 (5.1%) | 626 (4.2%) | 139 (0.92%) | 844 (5.6%) |
| | | 7천개 | 3만1천 | 72만6천 | 8백개 | 21만4천개 |
| | | | | | | |

※ 기타시설: 스포츠경기(관람)장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방문판매 등, PC방, 이미용업, 영화관·공연장, 오락실·멀티방, 놀이공원·워터파크, 키즈카페, 마사지업소·안마소, 결혼식장, 장례식장 등

<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(10.27. 현재)>

| 예방접종 | 전체 인구 | 18세 이상 |
|------|-------|--------|
| 1차접종 | 79.6% | 92.0% |
| 접종완료 | 71.5% | 83.1% |

- (예외) 시설별 이용 필수성 및 위험도에 따라 미접종자 예외 범위 설정
 - * 접종 완료자,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, 18세 이하, 완치자,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
- (혜택)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하면서, (1차) 시간(22시까지) 및 인원 (8m²당 1명) 제한 해제 → (2차) 실내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 완화*
 - * 시설내 취식 금지 등 고위험행위 규제 및 기본 방역수칙만 적용

< 예시 : 수도권 4단계 지역 실내체육시설(GX류)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도입 시 >

| 구분 | 현행 | 개편(안) |
|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운영시간 | 22시 제한 | 제한 해제 |
| 방역수칙 | 6m ² 당 1명, 음악속도 제한, 샤워실 운영금지, 취식 금지 | 해제 (취식금지는 2차에서 해제) |
| 이용대상 | 제한 없음 | 접종완료자, PCR음성확인자, 18세이하, 건강 등 소간서 소지자 |
| 기본방역수칙 | 마스크착용, 출입명부작성, 환기·소독, 방역관리자 운영 등 | 현행과 같음 |

- (식당 · 카페)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,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식당·카페는 사적모임 규모 및 미접종자 이용 규모 제한으로 관리

* (싱가포르) 레스토랑 등 식당은 백신접종자·PCR 음성자만 출입 허용, 다만, 커피숍(카페)와 호커(푸드코트 형식의 실외식당)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2인까지 허용

◆ 식당·카페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도입 여부 검토 결과

- (필요성) 식당·카페는 취식 공간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 백신접종 완료자 등만 출입을 허용하는 백신증명 도입 사례* 다수
 - *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, 미국(뉴욕), 덴마크, 캐나다(온타리오)
- (검토결과)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미접종자 2~4명까지 이용에 제한이 없어 백신증명 요구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제기되어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대신 미접종자 이용 규모 제한으로 관리 필요
 - *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방문때마다 PCR 음성확인 요구도 곤란

- (그 외 시설)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, 접종완료자 등*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 · 취식 등 인센티브 적용
 - * 접종 완료자,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, 18세 이하, 완치자,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
- (대상) 영화관, 공연장,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 (학원·독서실* 제외)
 - * 18세 이하 아동·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학원·독서실은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밀집도 완화 제외(교육부)

- (방역조치 완화) 일부 고위험행위(실내취식 등)를 제외하고, 시간제한 해제, 인원제한 최소화 및 기타 방역수칙 해제
- (접종 인센티브)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만 이용 시 (1차) 인원 제한, 좌석 띄우기 등 제한 해제 → (2차) 시설내 취식 허용
- (취식 시범운영) 1차 개편 시 영화관(실내 분야), 실외 스포츠 관람(실외 분야) 등에서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취식 허용하고 영향 평가

< 예시 : 1차 개편 이후 영화관 운영 사례 >

| 구 분 | 현행 | 개편(안)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접종자+미접종자 혼합 |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|
| 운영시간 제한 | 22시 제한 | 해제 | 해제 |
| 방역수칙 | 일행간 한 칸 띄우기 팝콘 등 취식금지 | 일행간 한 칸 띄우기 팝콘 등 취식금지 | 한 칸 띄우기 해제 취식금지 해제(시범운영) |
| 이용대상 | 접종자 및 미접종자 | 접종자 및 미접종자 | 접종완료자,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등 |
| 기본방역수칙 | 마스크, 출입명부작성, 환기 소독, 방역관리자 운영 등 | 좌동 | 좌동 |

③ 거리두기 단계별 시설별 수칙의 통합 정비 및 단계적 해제

○ (인원제한) 복잡한 단계별 시설별 인원 기준 통합 정비

- (1차) 유사시설 간 인원제한 기준을 최소 기준으로 통합하여 현장 수용성 제고($4m^2$ 당 1명, 좌석 띄우기, 정원 50% 등)
 - *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 제한 해제 인센티브 적용(학원·독서실 제외)

| 구분 | 현행(m^2 /좌석 띄우기/수용인원 %) | 개편(안)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·유흥시설 | 1단계: $8m^2$ 당, 2~3단계: $10m^2$ 당 | |
| ·콜라텍·무도장 | 1단계: $8m^2$ 당, 2~3단계: $10m^2$ 당 | |
| ·노래연습장 | 1단계: $6m^2$ 당, 2~4단계: $8m^2$ 당 | |
| ·목욕장 | 1단계: $6m^2$ 당, 2~4단계: $8m^2$ 당 | |
| ·실내체육시설 | 1단계: $6m^2$ 당, 2~4단계: $8m^2$ 당 | |
| ·영화관 | 1단계: 없음, 2~4단계: 일행간 한 칸 (정규) 1단계: 없음, 2~4단계: 1회 최대 5,000명 (임시) 1단계: 없음, 2단계: 1회 최대 5,000명, 3단계: $6m^2$ 당 1명+최대 2,000명, 4단계: 금지 |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 시 인원기준 해제 |
| ·공연장 | | <좌석당 인원 기준> 일행간 한 칸 띄우기 |
| ·학원 |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$6m^2$ 당 1명(3~4단계) |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$4m^2$ 당 1명 |
| ·스포츠관람장 (실내/실외) | 1단계: 50%/70%, 2단계: 30%/50%, 3단계: 20%/30%, 4단계: 무관중 | <수용인원당 인원 기준> 수용인원 50% |
| ·종교시설 | 1단계: 50%, 2단계: 30%, 3단계: 20%, 4단계: 10% | |
| ·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 ·도서관 등 | 3~4단계: $6m^2$ 당 1명의 30~50% | 인원기준 해제 |

- (3차) 시설별 인원제한 기준 해제하고 기본 방역수칙*으로 반영
 - * 기본 방역수칙상 가급적 사람간 1미터 거리두기 권고
- (취식 제한) 독서실, 실내체육시설, 열차 등 대다수에서 제한 중이나, 마스크를 벗게 되는 고위험행위에 해당하여 2차 이후 완화 검토
 - * 위험도가 낮은 영화관(실내), 실외스포츠 관람(실외)에 대하여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시 취식을 허용하는 시범 운영을 해보고 결과 평가
- (수칙 간소화) 단계별·시설별 방역수칙을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으로 단순화하고, 필수 방역조치 중심으로 각종 제한 해제*
 - * (예시) 식당·카페에서 1시간 이용 제한(강력권고) 등 해제

3] 행사 · 집회

◆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만 가능하도록 정비하고,
3차 개편에서 미접종자도 가능하도록 제한 해제

① 접종 완료자부터 대규모 행사 · 집회 허용

- (현황) 일반적인 행사는 단계별 인원제한 적용 중이며, 전시·박람회 등은 개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방역수칙 적용 중

| 구분 | 방역 수칙 | 예시 |
|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|
| 행사 일반 / 집회 | ·3단계 50명 미만, 4단계 행사 금지(비대면만 허용) | ·지역축제, 기념식 등 |
| 전시·박람회 | ·면적 6m ² 당 1명, 상주인력 PCR 음성자 | ·임신육아박람회 |
| 국제회의 | ·좌석 2칸 띄우기 / 2m 거리두기 | ·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 |
| 학술행사 | ·3단계 공간별 50명 미만, 4단계 50명 미만 | ·추계학술대회 등 |
| 결혼식 | ·3~4단계 50명 미만 ·접종 인센티브 포함 시 최대 250명 | |

- (개편방향)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하되,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*만 가능하도록 정비
 - * 접종 완료자,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, 18세 이하, 완치자,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
- (해제) 3차 개편에서 위험도 등을 평가하여 해제 여부 결정

● (행사) 단체·법인·공공기관·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,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, 기념행사, 수련회, 사인회, 강연, 대회, 훈련 등과 결혼식, 장례식, 피로연, 돌잔치

② 단계별 개편 주요내용

- (1차 개편) 100명 미만 행사·집회는 허용하되,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·집회는 접종완료자 등^{*}으로만 500명 미만으로 허용
 - * 접종 완료자,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, 18세 이하, 완치자,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
 - (100명 미만) 접종자·미접종자 구분 없이 행사·집회 가능
 - * 현재 수도권은 행사 금지, 비수도권은 50인 또는 100인 미만 행사 가능
 - (100~499명) 접종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①PCR 음성확인자, ②18세 이하, ③완치자, ④불가피한 미접종 등 예외 대상자로만 참여시 가능
 - * 공청회, 기념행사, 수련회, 사인회, 강연회, 결혼식, 돌잔치, 피로연 등 모든 행사 대상
 - (시범운영)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·스포츠대회·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·지자체^{*}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 평가
 - * 대중공연·스포츠대회(문체부), 지자체 축제(행안부, 지자체) 등
 - (방역조치 완화)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행사는 좌석 띄우기, 정원 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하고 마스크 등 기본 수칙만 적용
 - (경과조치) 100명 이상의 접종·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, 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, 2차 개편에서 통합

* (결혼식) 미접종 49인 + 접종 201명, 250명까지 가능

(전시·박람회) 면적 6m²당 1명, 상주인력 PCR 음성자 수칙 하 제한 없음

(국제회의)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

- (2차 개편) 접종완료자 등^{*}으로만 운영시 인원제한 없이 행사 가능, 장소별, 목적별로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
 - * 접종 완료자,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, 18세 이하, 완치자,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
 - (통합 정비) 별도 수칙 적용하던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스포츠대회, 결혼식 등도 2차 개편부터 통합하여 동일원칙 적용
 - * 결혼식, 돌잔치, 박람회·전시회, 각종 대회, 축제, 야외콘서트, 집회 등 모든 행사

- (예외 정비) 현장에 혼선이 많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 관련 행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원칙 적용
 - * (예) 기업 정기 주주총회, 예산·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, 방송제작·송출 등
 - (방역조치 완화) 접종완료자 등만 운영시 취식금지 해제
- (3차 개편) 접종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(100명 이상)을 해제하거나,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 검토
- (접종 완료자 등)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·집회는 주최자(집회 신고자) 또는 관리·운영자(시설)가 참석자 전원의 접종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, 접종완료자 등 외에는 참여 제한 조치 실시
- 지자체 등 점검 시 인원, 접종확인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가능
 - 마스크 착용, 소독·환기,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, 출입명부 작성 (QR코드, 안심콜 등), 사람간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

< 행사 · 집회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>

| | 현재 | 1차 개편 | 2차 개편 | 3차 개편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접종자 + 미접종자 | (4단계) 행사금지 | 100명 미만 행사 가능 ※ 결혼식, 박람회 등 개별수칙 가능 | | 인원제한 해제 및 기본방역 수칙 준수 |
| 접종자, PCR(-) 등만 참여 | (3 단계) 50명 미만 | 500명 미만 행사 가능 (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 등 시범운영) ※ 좌석 띄우기, 정원 제한 등 각종 방역조치 해제 | 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 가능 | |

4) 사적모임

◆ 연말연시 고려 수도권 10명, 비수도권 12명으로 소폭 조정, 3차 개편 시 해제

□ 연말연시 모임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

- (사적모임) 동창회, 동호회, 직장 내 회식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, 가족·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

- (현황) 수도권(4단계)은 미접종자 4명에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, 비수도권(3단계)은 미접종자 4명에 접종완료자 포함 10명 모임 가능

< 수도권·비수도권 지역별 4단계 사적모임 기준 >

| 구분 | 수도권 | 비수도권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사적 모임 | 적용시설 모든 다중이용시설 | 모든 다중이용시설 |
| 인원수 | 4명+4명 | 4명+6명 |

- (개편 방향) 수도권 총 10명, 비수도권 총 12명까지 허용, 3차 개편 시 해제

- 연말연시 모임* 활성화로 인한 방역상황 악화, 생업시설·행사 제한 등에 비해 민생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 완화

* 직장, 학교, 동문회, 동호회, 향우회 등의 대규모 식사모임 (송년회, 신년회 모임)

-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 해제하되,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·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제한 유지

* (식당·카페) 수도권 4명(미접종자)+6명, 비수도권 4명(미접종자)+8명

(그 외 시설)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, 비수도권 12명

< 사적모임 제한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>

| 1차 개편 | 2차 개편 | 3차 개편 |
|--|-------|------------|
| 수도권 10명, 비수도권 12명 (접종자·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 구성 가능, 단, 식당·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) | | 사적모임 제한 해제 |

◆ 사적모임 미접종자 인원 제한 검토 결과

- 총 인원을 제한하면서, 동시에 미접종자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현장 이행력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어 사적모임 규모는 총원으로만 제한
- 다만, 감염위험 높은 일부 시설(유흥시설 등)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하도록 하는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*를 도입하고,
 - * 접종 완료자,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, 18세 이하, 완치자, 불가피한 사유 접종불기자 등
- 그 외 시설은 접종율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미접종자 이용을 제한하지 않되, 접종 완료자 등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 해제
- 또한, 식당·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위험이 존재하나,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워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은 하지 않되, 미접종자 인원 제한 실시

□ 단계별 개편 주요내용

- (1~2차)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, 비수도권 12명으로 확대, 식당·카페에 한해 미접종자 4명(수도권 4+6, 비수도권 4+8)까지 가능
- (3차) 사적모임 인원제한 해제
- (예외) 동거가족, 돌봄(아동·노인·장애인 등), 임종,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,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 예외 적용

5) 감염 취약시설 보호

- ◆ 사망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 강화

□ 이용자 특성상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 보호

- (의료기관 면회 등) ①면회시간 제한 및 접종자만 면회 허용
②미접종자 직원 및 간병인력은 주1회 PCR검사 의무화 ③신규 입원환자는 전수 선제 PCR 검사
- (요양병원 · 시설) ①접종자에 한해 접촉면회 허용 ②종사자(간병인 포함)은 수도권 주 1회, 비수도권 2주 1회 PCR검사 의무화(단계별 완화 예정) ③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 검사
- (경로당, 노인복지관, 문화센터 등) 고령층의 공동 식사 · 모임 등 위험도가 크므로 접종완료자만 출입 허용, 미접종자 이용 금지
- (중증장애인, 치매 등 수용시설) ①미접종자 방문 · 이용 금지 ②미접종자 직원은 주1회 PCR검사 의무화 ③신규 입소자 PCR 검사
- (추가 접종) 고위험군, 고령층 등에 대한 추가 접종 적극 추진

6) 종교활동 및 기타 일상 영역

◆ 종교활동도 동일한 원칙 하에 일상 회복 추진, 이외 교육, 직장, 군 및 여행·공연·문화 등 다양한 일상 분야의 일상회복 계획 수립 및 실행

□ 정규 종교활동 확대 및 고위험행위 단계적 완화

- (정규 종교활동) 미접종자 포함 시 정규 종교활동(예배, 법회, 시일식 등) 50% 가능, 접종 완료자 등^{*}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인원제한 해제(1차 개편)
 - * 접종 완료자,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, 18세 이하, 완치자,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
- (소모임)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(종교시설 내 한정, 취식·통성기도 등 금지) 소모임 허용
- (수련회 등 행사) 행사 규정^{*}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
 - * (1차) 미접종자 포함 100인 미만,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500명 미만

□ 학교, 직장 및 군인 등 분야별로 안전한 일상 회복 추진·지원

- * 소관 부처가 관련 분과 및 단체·협회 논의 등을 통하여 일상회복방안 수립
- (학교) 단계적 일상회복을 고려한 방역 지원조치와 함께 대면수업 추가 확대, 교육활동 정상화 등으로 교육결손 회복 추진 (교육부)
- (사업장) 재택근무, 화상회의 해제 및 유지, 고위험사업장(콜센터·물류센터 제외)의 자율 방역 및 환경 개선 등 사업장 일상회복 방안 마련 (고용부)
- (군) 훈련·면회·병영생활 등 군의 일상회복 방안 마련 (국방부)
- (사회복지) 노인·장애인 복지시설, 아동·청소년 등 각 분야별로 접종 완료자 중심 프로그램 활성화 등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(복지부)
- (공공기관)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출장, 복무, 회식 등 복무규정 및 직장 문화의 일상회복방안 수립 및 실시 (인사처, 행안부 등)
- (기타) 안전한 여행·공연·문화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환경 조성 등 일상 속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일상회복 방안 마련

7) 일상 속의 방역실천 강화

◆ 자율과 참여에 기반하여, 다양한 일상 속 방역실천 강화

□ 기본방역수칙 유지 및 실천방역 보급

- (의무수칙) 실내 마스크(실외는 한정적 의무), 신속·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등 핵심수칙만 의무화
 - (마스크 수칙) 방역 긴장감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1차 개편까지는 현행 체계 유지, 2차 개편 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및 해제 범위 조정 검토
- (권고수칙) 방역수칙 게시,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·사용, 주기적 소독 및 환기, 사람 간 1m 간격 유지 등 시설별·업종별 수칙 개발
- (실천방역)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다양한 일상 속의 실천방역 수칙* 개발 및 정보 제공, 교육·홍보, 국민 캠페인 강화
 - * 여행, 모임, 운동, 결혼식, 캔막이, 환기 등 일상생활 속 권장수칙 개발

□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역별 업종별 참여 확대

- (지역자율) 일상 전환과정에서 지자체의 지역별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하고, 지역 내 일상회복 추진단 구성·운영
 - * 행사, 사적모임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의 지역별 판단 및 조정 권한 존중
- (민간자율) 소관 부처에서 주요 업종별 부문별로 일상회복 협의체 구성 및 안전한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민관 협력* 강화
 - * 업종 특성을 고려한 권장수칙 개발 및 실천, 지원방안 등 협의

□ 이행력 담보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조 강화

- (벌칙 강화) 전반적인 방역 완화를 감안하여 마스크 착용,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등 핵심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·처벌 등 벌칙 강화 검토
- (자율준수) 핵심수칙 위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, 관련 협회·단체의 자율준수 노력 유도, 다빈도 위반시 집중점검 실시

8) 접종증명 · 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도입

◆ 안전한 일상 전환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활용

□ 도입목적 및 취지

- (목적)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,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도 및 위중증율·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의 유행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,
 -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한시적 도입
- (대상)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①PCR 음성확인자*, ②불가피한 일부 예외** 등을 위험도 및 필수성에 따라 예외범위 인정

*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(유효기간 종료일)의 자정까지 효력

** 18세 이하 아동·청소년, 완치자, 접종 후 중대이상 반응 등 접종 곤란 사유

□ 단계별 적용 분야

| 1차 개편 | 2 ~ 3차 개편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적용 | 100인 이상 행사·집회, (방역상황 안정 시 단계적으로 해제) |

- (1차)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 취약시설에 우선 적용
 - (고위험시설) 유홍시설, 노래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, 경륜·경정·경마, 카지노 등 (209만개 시설 중 약 13만개 해당)
 - (취약시설) 의료기관(입원), 요양시설 면회, 중증장애인·치매시설, 경로당·노인복지관·문화센터 등 고령·취약층 시설
- * 미접종자 포함 행사기준인 100명을 초과하여 500명 미만의 행사 개최 시 접종증명 · 음성확인제 활용하여 행사 가능
- (2차)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·집회 개최 시 적용
 - * 결혼식, 박람회, 학술행사, 콘서트, 체육대회, 축제, 집회 등 모든 행사

- (해제) 2차 개편 이후 집단감염 등 방역지표를 평가하며,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
- (예외범위) 미접종자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 등의 위험도 및 필수성 등을 고려하여 미접종자 예외범위 결정
 - PCR 음성 확인서, 만 18세 이하 아동·청소년, 완치자, 불가피한 접종 불가(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금기자 등) 등 다양한 상황 고려
 - 아동·청소년들이 다수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 등의 예외범위에 대해서는 교육부 중심으로 추가 논의, 향후 구체화 예정

<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>

| 구 분 | 접종완료자 |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
| | | PCR음성 | 의학적사유 | 18세 이하 |
| 유흥시설 | ○ | × | × | × |
| 경마·경륜·경정/카지노 | ○ | ○ | × | × |
| 실내체육시설 | ○ | ○ | ○ | ○ |
| 노래연습장 | ○ | ○ | ○ | ○ |
| 목욕장 | ○ | ○ | ○ | ○ |
| 입원자·입소자 면회 | ○ | ○ | × | × |
| 노인·장애인 시설이용 | ○ | ○ | × | × |

□ 실행방안

- (발급방식) 디지털 증명서를 우선적으로 활용, 종이 문서 사용도 병행
 - ①전자증명서(COOV 앱 등), ②종이 증명서(보건소, 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·발급), ③예방접종스티커(신분증*에 부착하여 사용) 등
 - *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
- (확인방식) QR 코드 확인을 권장*하되, 불가피한 경우 육안 확인
 - * 상대적으로 위·변조가 어렵고, 역학조사·동선추적 시 편의성 등을 고려
- (이행력 확보) 접종 증명서 위·변조 및 부정한 사용(형법), 증명서 적용 시설의 증명서 미확인(감염병예방법)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

- 특히 전환 초기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·단속 실시
 - 다만,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수용성 제고 위해 1주간 계도기간 운영 및 홍보 강화
- (기본방역수칙) 접종증명 · 음성확인제 도입 시설*도 실내 마스크 착용, 신속·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한 전자출입명부(QR 코드) 등 출입명부관리, 환기와 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중요성 강조
- * 유흥시설, 실내체육시설, 노래연습장, 목욕장업, 경마 · 경륜 · 경정 · 카지노 등

9) 비상계획(contingency plan) 전환 준비

◆ 상정범위를 초과하여 의료체계 여력이 위험한 경우 비상계획 발동

※ (영국) 7월부터 방역 해제, 현재 1일 확진자 수 5만여명, 사망자수도 223명으로 최고치
(싱가포르) 방역전환 준비 중 확진자 급증, 중환자 병상여력 감소로 모임 규제 강화(5명→2명)

□ 목적 및 기준

- (목적) 일상회복 전환과정에서 상정 범위를 초과한 중증환자, 사망자 발생이 지속되어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,
 - 일시적으로 강력한 비상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, 일상회복 전환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상계획 검토
- (검토기준) ①중환자실 · 입원병상 가동률 악화, ②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, ③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기준 마련

< 비상계획 실행 기준(예시)>

- (실시기준)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5% 이상 또는 주 7일 이동평균 70% 이상인 경우
→ 중환자 · 확진자 증가율 등 종합적으로 판단, 긴급 위험평가 회의 개최
- (경고기준)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주 7일 이동평균 60% 이상 또는 현 시점 기준 확진자 주 7일 이동평균 3.5천명 ~ 4천명 이상 → 비상계획 실행 대비 상황점검 준비
* 향후 방역의료분과 논의를 거쳐 보다 구체화 예정

- (검토절차)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

주요 내용

- * 방역의료분과 논의 등을 거쳐 보다 체계적인 비상계획 수립 예정
- (미접종자 보호 강화)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를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여,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 차단 강화(식당은 1인 이용 가능하도록 예외)
- (개인간 접촉) 개인간 접촉 최소화를 위한 사적모임 제한 강화 및 행사 규모 제한·축소, 시간 제한 등 검토
- (취약시설 보호) 요양병원 등의 면회 금지 및 종사자 선제검사 등 고령층 밀집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보호 조치 실시
- (의료대응) 긴급 병상 확보계획 실시 및 재택치료 확대, 인력 동원 등 의료체계 여력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 실시

불임 1

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후 일상의 변화

| 구분 | 현재 (수도권 기준) | 11월 (1차 개편) |
|------------------|--|--|
| 음식점 / 카페 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22시까지만 매장이용, 이후는 포장·배달만 가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시간제한 없이 온·종일 이용 가능· 사적모임 제한적용 |
| 독서실, 스터디카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24시까지 이용 가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 |
| 영화관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24시까지 관람· 일행간 한칸 띄우기· 팝콘 등 음식물 섭취 불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온·종일 이용 가능· (접종자만 이용시) 팝콘, 음료 등 허용, 좌석 띄우기 없음 |
| 학원 / 교습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22시까지 이용 가능· 좌석 두칸띄우기 또는 6m당 1명 가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(11.22~)·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4m당 1명 가능 |
| 헬스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22시까지 운동 가능, 샤워실 이용 불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(접종증명·음성확인 도입) 24시간 이용, 음악속도 등 해제 및 샤워 가능 |
| 노래 연습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22시까지 이용 가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(접종증명·음성확인 도입) 24시간 이용 가능 |
| 야구장 경기 관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접종완료자만 30%· 치킨 등 취식 금지· 응원, 함성 금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접종 구분없이 50% 입장· (접종자 전용구역) 취식 허용 및 100% 좌석 입장 가능· 응원, 함성 금지 유지 |
| 결혼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총 250명(49명+접종완료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접종완료자 500명 미만 가능· 접종 구분없이 100명 미만 가능· 총 250명(49명+접종완료자) |
| 대형콘서트 팬 사인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야외, 임시공연장 등의 비정규 콘서트 불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접종완료자 등만 참여시 500명 미만 가능, 그 이상 규모는 문체부 승인 하에 가능 |
| 기념식 등 각종 행사 및 집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개최 불가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행사, 집회 가능·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|
| 친구들 / 가족 모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8명(4+4)까지만 가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수도권 10명, 비수도권 12명, 식당·카페 외 접종여부 구별 없음 |

불임 2

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시설별 · 단계별 적용례

| 구분 | 1차 개편 | 2차 개편 | 3차 개편 |
|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|
| 개편핵심 | ■ 운영시간 제한 해제 | ■ 대규모 행사 개최 허용 | ■ 사적모임 제한 해제 |
| 사적모임 | ■ 수도권 10명, 비수도권 12명 | ■ 수도권 10명, 비수도권 12명 | ■ 제한 없음 |
| 운영시간 | ■ 제한 없음(유흥시설 24시) | ■ 제한 없음 | ■ 제한 없음 |
| 행사·집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■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■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, 인원 제한 없음 | |

| 1차 개편 | 2차 개편 | 3차 개편 |
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| | |
| ▲ 유흥시설(5종) ▲ 콜라텍·무도장 | | |
| ■ (이용 가능자) 접종 완료자, 완치자 | ■ (이용 가능자) 접종 완료자, 완치자 | ■ (이용 가능자) 접종 완료자, 완치자 |
| ■ (운영시간) 24시 | ■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| ■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|
| ■ (인원) 제한 없음 | ■ (인원) 제한 없음 | ■ (인원) 제한 없음 |
| ▲ 노래(코인)연습장 ▲ 목욕장업 ▲ 실내체육시설 ▲ 카지노 ▲ 경륜·경정·경마장 | | |
| ■ (이용 가능자) 접종 완료자 등 | ■ (이용 가능자) 접종 완료자 등 | ■ (이용 가능자) 접종 완료자 등 |
| ■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| ■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| ■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|
| ■ (인원) 제한 없음 | ■ (인원) 제한 없음 | ■ (인원) 제한 없음 |
| ■ (취식) 금지 | ■ (취식) 가능 | ■ (취식) 가능 |
| ■ (기타) 실내체육시설은 1차 시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(그 외 시설은 1주) | | |
|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| | |
| ▲ 식당·카페 | | |
| ■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| ■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| ■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|
| ■ (인원)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| ■ (인원)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| ■ (인원) 제한 없음 |
| ■ (기타) 미접종자는 4명까지 가능 | | ■ (기타) 미접종자 제한 없음 |
| ▲ 영화관·공연장 | | |
| ■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| ■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| ■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|
| ■ (인원)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| ■ (인원)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| ■ (인원) 제한 없음 |
| ■ (취식) 금지 | ■ (취식) 가능 | ■ (취식) 가능 |
| ■ (기타)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, 이 경우 영화관은 취식 가능 | | |
| ▲ 스포츠경기(관람)장 | | |
| ■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| ■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| ■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|
| ■ (인원) 수용인원의 50% | ■ (인원) 수용인원의 50% | ■ (인원) 제한 없음 |
| ■ (취식) 금지 | ■ (취식) 가능 | ■ (취식) 가능 |
| ■ (기타)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, 취식 가능 | | |
| ▲ 학원 등(좌석 없는 경우) ▲ 오락실·멀티방 | | |
| ■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| ■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| ■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|
| ■ (인원) 4m ² 당 1명 | ■ (인원) 4m ² 당 1명 | ■ (인원) 제한 없음 |
| ■ (취식) 금지 | ■ (취식) 가능 | ■ (취식) 가능 |
| ■ (기타) 학원은 11.1.~11.21. 기간 22시 제한 유지, 11.22.부터 시간 제한 해제 | | |
| ▲ 학원 등(좌석 있는 경우) ▲ 독서실·스터디카페 ▲ PC방 | | |
| ■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| ■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| ■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|
| ■ (인원) 좌석 한 칸 띄우기 | ■ (인원) 좌석 한 칸 띄우기 | ■ (인원) 제한 없음 |
| ■ (취식) 금지 | ■ (취식) 가능 | ■ (취식) 가능 |
| ■ (기타)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(학원·독서실 제외)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해제(학원 제외), PC방은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학원은 11.1.~11.21. 기간 22시 제한 유지, 11.22.부터 시간 제한 해제 | | |
| ▲ 놀이공원·워터파크 | | |
| ■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| ■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| ■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|
| ■ (인원) 수용인원의 50% | ■ (인원) 수용인원의 50% | ■ (인원) 제한 없음 |
| ■ (취식) 가능 | ■ (취식) 가능 | ■ (취식) 가능 |

| 1차 개편 | 2차 개편 | 3차 개편 |
|--|--|--|
| ■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■ (인원) 제한 없음 ■ (취식) 금지 | ■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■ (인원) 제한 없음 ■ (취식) 가능 | ■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■ (인원) 제한 없음 ■ (취식) 가능 |
| ▲ 실외체육시설 | ▲ 상점·마트·백화점 | ▲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 |
| ▲ 도서관 | ▲ 전시회·박람회 | ▲ 국제회의·학술행사 |
| ■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■ (인원) 제한 없음 ■ (취식) 금지 ■ (규모)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■ (기타) 1차 시 종전 수칙(6m ² 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 인력 PCR 음성)도 택일 가능(2~3차 시에는 불가) | ■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■ (인원) 제한 없음 ■ (취식) 가능 ■ (규모)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| ■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■ (인원) 제한 없음 ■ (취식) 가능 |
| ▲ 결혼식, 돌잔치, 장례식 | ▲ 종교시설 | |
| ■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■ (인원) 4m ² 당 1명,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■ (취식) 가능 ■ (규모)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■ (기타) 결혼식은 1차 시 종전 수칙(49명+접종 완료자 201명)도 택일 가능(2~3차 시에는 불가) | ■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■ (인원) 4m ² 당 1명,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■ (취식) 가능 ■ (규모)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| ■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■ (인원) 제한 없음 ■ (취식) 가능 |
| | | |
| ■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■ (인원) 수용인원의 50% ■ (취식) 금지 ■ (통성기도 등) 금지 ■ (기타)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(예배 등) 가능 정규 종교활동 외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·성가대 가능 | ■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■ (인원) 수용인원의 50% ■ (취식) 가능 ■ (통성기도 등) 가능 | ■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■ (인원) 제한 없음 ■ (취식) 가능 ■ (통성기도 등) 가능 |

* 접종완료자 등 : 접종 완료자, PCR검사 음성자(48시간), 18세 이하, 완치자,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

** 취식 불가능 : 물,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,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(식당·카페 입점 등)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

붙임 3**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**

| 공통 기본 방역수칙 | | |
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· 방역수칙 게시·안내 ·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 | · 출입자 명부 관리(전자출입명부·안심콜 등) ·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| · 실내 마스크 착용 · 일 1회 이상 소독 |
| 방역수칙 | | |
| ▲ 유흥시설(5종) ▲ 콜라텍·무도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운영시간) 24시까지 (밀집도) 제한 없음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, 완치자 (취식 가능 여부) 유흥시설은 가능, 콜라텍·무도장은 불가능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의무 적용 | |
| ▲ 노래(코인)연습장 ▲ 목욕장업 ▲ 실내체육시설 ▲ 경륜·경정·경마장 ▲ 카지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(밀집도) 제한 없음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의무 적용 <p>※ (실내체육시설) 샤워실 이용 가능, 음악속도·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(그 외 시설은 1주)</p> | |
| ▲ 식당·카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(밀집도)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(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)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 | |
| ▲ 영화관·공연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(밀집도)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※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※ (영화관)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 | |
| ▲ 스포츠경기(관람)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(밀집도) 수용인원의 50% ※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※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 | |
| ▲ 학원 등(좌석 없는 경우) ▲ 오락실·멀티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※ (학원) 11.1.~11.21. 기간 22시 제한 유지, 11.22.부터 시간 제한 해제 (밀집도) 시설 신고·허가 면적의 4m²당 1명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 | |
| ▲ 학원 등(좌석 있는 경우) ▲ 독서실·스터디카페 ▲ PC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※ (학원) 11.1.~11.21. 기간 22시 제한 유지, 11.22.부터 시간 제한 해제 (밀집도) 좌석 한 칸 띄우기(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) ※ (학원)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※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(학원·독서실 제외)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※ (PC방)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 | |

| 시설명 | 방역수칙 |
|---|---|
| ▲ 놀이공원·워터파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수용인원의 50% ·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·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 ·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 |
| ▲ 실외체육시설 ▲ 상점·마트·백화점 ▲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 ▲ 도서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제한 없음 ·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·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 |
| ▲ 전시회·박람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제한 없음 · (이용 가능 대상)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(혼합 적용 불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※ 종전 수칙(6m²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)도 택일 적용 가능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·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 |
| ▲ 국제회의·학술행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좌석 한 칸 띄우기 · (이용 가능 대상)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(혼합 적용 불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※ (국제회의) 종전 수칙(좌석 간 2칸 띄우기)도 택일 적용 가능 ·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 ·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 |
| ▲ 결혼식, 돌잔치, 장례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시설 신고·허가 면적의 4m²당 1명,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· (이용 가능 대상)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(혼합 적용 불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※ (결혼식) 종전 수칙(49명+접종 완료자 201명)도 택일 적용 가능 ·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 ·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 |
| ▲ 종교시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수용인원의 50%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·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·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 · (기타) 통성기도 등 금지, 정규종교활동(예배 등)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·성가대 가능 |

* 접종 완료자 등 : 접종 완료자, PCR검사 음성자(48시간), 18세 이하, 완치자,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

** 취식 불가능 : 물,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,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(식당·카페 입점 등)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

불임 4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 다중이용시설 현황

※ 관계부처 및 지자체를 통해 취합한 자료로서 휴폐업 등으로 실제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내리는 대상 시설의 개소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| 구분 | 시설명 | 전체 | 수도권 | 비수도권 | |
|--|---------|---|--------|------|--|
| 총 계 | | 2,093,234(134,220 ^{적용} /1,959,014 ^{미적용}) | | | 비고 |
| 소계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) | 134,220 | 62,723 | 71,497 | | |
| 유흥시설 | 40,733 | 13,469 | 27264 | | 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나이트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·무도장 |
| 노래연습장 | 30,722 | 15,478 | 15,244 | | 코인노래연습장 포함 |
| 실내체육시설 | 54,250 | 27,204 | 27,046 | | |
| 목욕장업 | 8,474 | 6,551 | 1,923 | | |
| 경마경륜경정/카지노 | 41 | 21 | 20 | | 내국인 카지노 한정 |
| ※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등(합계: 1,959,014) | | | | | |
| △ 식당카페(일반·휴게·제과점영업) △ 학원(교습소 포함) △ 영화관·공연장 △ 스포츠(관람)경기장 △ 상점 등 (대규모점포, 전통시장 등 포함) △ 이미용업 △ PC방 △ 독서실 △ 도서관 △ 숙박시설 △ 실외 문화체육시설 (공원, 휴양림,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) △ 놀이동산 등 유원시설 △ 미술관, 박물관, 과학관, 및 국공립시설 △ 지하철, 버스, 비행기, 여객선 등 교통시설 | | | | | |

불임 5 시설별 백신패스 적용여부 해외사례 비교

| 그룹 | 시설 | 한국 (안) | 프랑스 (보건패스) | 이탈리아 (그린패스) | 독일 (3G) | 덴마크 (코로나패스) | 캐나다 (백신여권)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A | 의료 시설 | 요양병원, 요양시설, 의료기관 입원병동, 중증장애인보호시설 | ○ | ○ | - | ○ (방문객만) | - |
| | 취약 시설 | 경로당, 노인복지관, 고령층 문화센터 등 | ○ | - | ○ (문화센터 입장) | - | - |
| | 일반음식점 | -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| | 무도장(사교춤), 콜라텍 | ○ | ○ | - | ○ | ○ | ○ |
| | 경마, 경륜 | ○ | - | - | - | - | ○ |
| | 카지노 | ○ | ○ | ○ | ○ | - | ○ |
| | 노래방 | ○ | - | - | - | - | - |
| | 목욕장업 | ○ | - | ○(스파) | - | - | ○ |
| B | 실내체육시설(헬스장 등)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| | 학원 | 댄스/노래/관악기학원 | - | - | - | - | - |
| | 복합놀이시설 | 워터파크, 골프장 놀이공원, 동물원 | - | ○ | ○ | ○ | - |
| C | 문화공연 | 극장, 공연장 | - | ○ (50인 이상) | ○ | ○ | ○ |
| | 스포츠관람 | 야구장 등 | - | ○ | ○ | ○ | △ (축구장) |
| | 미술관, 박물관 | -* | △ (미술관) | ○ | - | ○ | ○ |
| | 종합체육관(실내) | -* | - | ○ | - | - | ○ |
| | 교육, 문화, 예술, 체육시설 | -* | △ (전시회, 컨퍼런스) | ○ (어린이 교육 센터 제외) | ○ (행사, 콘서트) | - | ○ (행사, 파티, 워크숍) |
| D | 카페 | - | ○ | ○ | - | ○ | - |
| | 게임장 | - | ○ | - | - | - | ○ |
| | 이미용 (미용실, 뷰티, 타투, 마사지 등) | - | - | - | ○ | - | - |
| | 도서관 | - | ○ | - | - | ○ | - |
| | 대중교통, 마켓, 상점 | - | - | - | △ (재량적용) | - | - |
| | 호텔풀서비스, 리조트 캠핑장 | - | ○ | - | - | - | - |
| | 장거리교통 | - | ○ | ○ | △ (항공여행) | - | - |
| 미 그룹 | 수영장 | - | - | ○ | ○ | - | ○ |
| | 근로사업장(공공, 민간) | - | - | ○(예정) | △ (재량적용) | - | - |
| | 회의참석 | - | - | ○ | - | - | ○ |
| | 일선 학교 교직원 | - | - | ○ | - | - | - |
| | 공공부문 시험응시 | - | - | ○ | - | - | - |
| | 크루즈, 페리 | - | ○ | - | - | - | - |

* 100명 이상 모임·집회 시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예정

불임 6 백신패스 해외 사례

① 프랑스 “보건 패스”

- (개요) 다중이용시설·집회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백신, 검사, 완치에 대한 보건패스 적용
- (방향) 법적근거 '보건위기관리법안'를 마련하고, 보건패스 의무 적용, 의료 관계자 백신접종 의무화 및 위반 시 법적 제재* 등 강력한 조치 시행 中
 - * 벌금, 사업장 폐쇄, 출입금지, 업무종사제한 등
- ※ 백신접종 및 식당 등 보건패스 의무화 반대 대규모 시위 촉발(16만명), 보건위기관리법안 위헌심판 등 반발이 거셌으나 법안은 합헌판결(8.5.), PCR검사 유료화 등 강력한 보건패스 및 백신접종 정책 기조 유지

② 이탈리아 “그린 패스”

- (개요) 여가·문화·공공시설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그린패스 적용을 확대(의무화) 中
- (방향) 10.15일부터 유럽 최초로 모든 근로자 대상 그린패스 소지를 의무화하고 위반자는 벌금, 급여미지급, 정직 등 강력 조치
- ※ 그린패스 소지 의무화 조치는 유럽 중 치명률이 두 번째로 높고(누적 사망자 13만명), 접종완료율 65%(9월 중순)로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한 조치

③ 독일 “3G Rule”

- (개요) 대다수의 다중이용시설에 ‘3G’^{백신 · 회복 · 검사} Rule’ 의무 적용
- (방향) 사업장 자율로 2G(음성검사결과 불인정)로 관리 수준을 높이고 있고, 접종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의료인·교직원 등 주요 대상 접종률이 이미 90%를 넘어 의무화 불필요로 잠정 결론
- ※ 3G Rule 시행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합의에 따라 기준 이상은 의무 시행, 그 외는 주별로 재량 시행(기준: 지난 7일간 10만명 당 확진자 35명 이상 시 의무 시행)

④ 덴마크 “코로나패스”

- (개요) 3G 대상으로 약 2주마다 밀집도 낮은 실외부터 거리두기 신중하게 완화
- (방향) 4월 코로나패스를 도입하여 약 4차례의 완화계획을 발표하고, 약 2주 주기로 거리두기를 세밀하게 조정하면서 약 5개월에 걸쳐 완화
 - ‘사회적 중요한 질병’ 분류에서 제외하고, 코로나패스 및 마스크 착용 등의 거의 모든 조치 해제(9.10.)
- ※ 유럽 내 가장 빨리 일상 회복 정책을 시작하였고, 약 5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신중히 완화, 대부분의 조치 해제

⑤ 캐나다 “백신여권”

- (개요) 비필수목적 입국을 허용(9.7.)하면서 백신접종력만으로 백신여권을 발급하여 자국 여행객 등에 활용 중
 - * 초기에는 4개 주가 참여, 시행 여부와 기준은 주별 자율로 정함
- (방향) 대상 시설들에 (단계적이 아닌) 일시에 적용하는 대신, 백신여권 적용의 예외 시설과 활동*을 구체적으로 제시
 - * (예시) 포장·결제·화장실 사용만을 위해서 실내 시설 이용 시, 결혼식·장례식에 혼자 참석 시, 식료품점·공공문화시설(도서관, 박물관, 미술관), 종교예배 등

⑥~⑧ 노르웨이, 오스트리아, 스웨덴 “백신여권”

- (개요) 대규모 이벤트(콘서트, 축구경기, 단체관광 등)나 고위험시설(나이트클럽 등)에만 선택적으로 적용

불임 7

모임 · 행사 해외 사례

| 구분 | 우리나라(안) | 싱가포르 | 독일(베를린주) | 영국 |
|------|--|--|---|--|
| 사적모임 | 수도권 10명, 비수도권 12명 | 2명 | ·(실내) 10명 ·(실외) 제한없음 → 해제 | 6명 또는 두가족 → 30명 → 해제 |
| 행사 | · 접종완료자만 구성시 제한 없음(2차) · 혼합시 100명 | · 접종완료자만 구성시 1,000명 · 혼합시 50명 | · 접종완료자만 구성시 2천명까지 | ·(실내) 1천명 또는 50% → 해제 ·(실외) 좌석 만명 또는 25% → 해제 |
| 결혼식 | 행사와 같음 | · 접종완료자만 1,000명 · 혼합시 50명 (피로연) · 접종완료자만 250명 | · 행사와 같음 * 개인 주관 결혼, 파티 시 실내 50명, 실외 100명 | · 8명 → 15명 → 30명 → 해제 |

* 접종완료자 : 백신접종완료자, PCR 음성확인자, 그 외 국가별 일부 예외는 상이함
(어린이, 완치자 등)

불임 8**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(10.27. 기준)**

○ 총괄 현황

(단위 : 명, %)

| 구분 | 전일 누계(A) | 신규 접종(B) ¹⁾ | 누적 접종(A+B) ¹⁾ | 인구 ²⁾ 대비 접종률 | |
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| | | | 18세 이상 | |
| 1차 접종 | 40,850,783 | 40,305 | 40,891,088 | 79.6 | 92.0 |
| 접종 완료 | 36,431,541 | 278,236 | 36,709,777 | 71.5 | 83.1 |
| 추가 접종 | 34,286 | 12,235 | 46,521 | | |

1) 안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 '1차 접종'과 '접종 완료' 통계에 모두 추가

2) '20.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(거주자) 기준(거주불명자, 재외국민 제외)

○ 연령별 접종 현황

(단위 : 명, %)

| 구분 | 인구*(A) | 접종자 현황 | | | | 접종률 | |
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| | 1차 | | 완료 | | 1차 (B/A) | 완료 (C/A) |
| | | 신규 | 누적(B) | 신규 | 누적(C) | | |
| 계 | 51,349,116 | 40,305 | 40,891,088 | 278,236 | 36,709,777 | 79.6 | 71.5 |
| 80세 이상 | 2,255,736 | 466 | 1,889,463 | 1,317 | 1,838,771 | 83.8 | 81.5 |
| 70-79세 | 3,757,129 | 650 | 3,515,684 | 1,807 | 3,459,669 | 93.6 | 92.1 |
| 60-69세 | 7,140,703 | 1,655 | 6,797,708 | 5,650 | 6,649,655 | 95.2 | 93.1 |
| 50-59세 | 8,570,076 | 3,021 | 8,172,896 | 6,476 | 7,908,622 | 95.4 | 92.3 |
| 40-49세 | 8,109,221 | 4,895 | 7,421,646 | 102,403 | 6,304,901 | 91.5 | 77.7 |
| 30-39세 | 6,686,639 | 6,730 | 5,892,101 | 70,713 | 4,880,086 | 88.1 | 73.0 |
| 18-29세 | 7,619,756 | 9,561 | 6,899,734 | 89,864 | 5,651,670 | 90.6 | 74.2 |
| 12-17세 | 2,768,836 | 13,327 | 301,856 | 6 | 16,403 | 10.9 | 0.6 |
| 11세 이하 | 4,441,020 | - | - | - | - | - | - |

* '20.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(거주자) 기준(거주불명자, 재외국민 제외)